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20.04.01. 내규 제316호

개정 2021.07.13. 내규 제3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제5조 및 제5조의 2에서 위임한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이하 ‘논문제출자격시험’ 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제7호에서 위임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한 별도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주관 석사, 박사,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학위과정 별로 소정의 응시원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응시절차를 생략한다.

제4조(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전공(교실)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따른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요약 발표 <개정 2021. 07. 13.>

2. 전공지식 관련 구술고사

② 제1항제1호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 평가위원은 2인 이상의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여 전공(교실)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박사학위 연구계획서) ①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면제하고자 하는 전공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과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와 의과대학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사학위 논문심사까지 심사를 담당한다.

③ 연구계획서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 중 연구계획서 심사를 면제받는 전공의 학생은 제1호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계획서 심사를 실시하는 전공의 학생은 제2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요약 발표 또는 구술고사 <개정 2021. 07. 13.>

2.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제1저자 논문 1편(원저논문) 논문지도교수 자체평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전문학술지는 SCI(E)/SSCI/AHCI, MEDLIN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한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 평가위원회는 2인 이상의 전임 및 기금교원으로 구성하여 전공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① 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의과대학 논문작성 가이드라인(별표 1)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각 전공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게재한 연구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
2.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친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술지 출판 이전의 심사용 제출논문만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에서 별도의 추가 요건을 정할 경우 의과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용할 수 있다.
- ③ 각 전공에서 기 승인받은 논문심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 학기 이전에 의과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박사학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이 정한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박사학위 논문 작성언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은 영어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학문(전공)분야별 특수성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인정 논문의 범위) ① 제4조 제1항제1호, 제6조 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저논문은 Original Article, Letter, Brief Communication, Meta analysis, 학위 논문 주제와 연관되는 Review Article에 한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 외의 논문도 원저논문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저명학술지 제1저자 논문은 Original Article에 한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 외의 논문도 Original Article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13.>

제10조(정년에 따른 지도학생 배정 제한) ①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년 퇴임시까지의 지도 가능 기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07. 13.>

부 칙 (제316호, 2020.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제1차 전체교수회의의 의결사항은 2021년도 8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석·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학내예비심사에 관한 사항은 2012학년도 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연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공은 동 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각 전공 내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석·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심사 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32호, 2021.07.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과대학 논문작성 가이드라인

심사대상논문은 대학원의 교육과정(coursework) 통과와 함께 박사학위 자격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심사위원회는 충분한 질의-응답과 구술심사를 통하여 심사신청자의 전문적 학술지식과 수행한 연구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향후 독립적 연구자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대상자 및 지도교수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학위수여의 적절함을 판단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가진다.

의학연구는 광범위한 주제와 수행방법(기초생명과학연구, 응용 및 중개의학적 연구, 인구집단/환자군 연구, 인문사회의학적 연구)을 포괄한다. 전문학술지 선행발표 기준은 전공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학위논문 작성의 일반규정과 연구윤리 준수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피심사자가 지키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의 포괄적 정리 및 논문 작성관련 연구윤리의 필수적인 세부사항들이다.

1. 학위논문 작성 원칙

가) 학위논문은 신청자의 주요 연구주제가 일관되게 적용된 완결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위의 가)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의 특성 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주제들이 별도의 장(chapter)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은 심사위원회가 판정한다.

다)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해당 분야의 특수성 및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라) 학위논문의 서문(Introduction)과 고찰(Discussion)을 통하여, 연구의 세부배경, 필요성, 충분한 수준의 관련분야 문헌 인용 및 지식의 종합을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마) 학위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재료(Materials & Methods)를 통하여 연구수행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준수 및 올바른 통계적 처리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바) 연구결과(Results)에 제시되는 자료(Figures, Tables, Video supplements)에 대한 실험수행/자료획득 중 일부가 공동연구자(용역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당 페이지 각주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의 역할

가)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심사 및 본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수정, 연구결과의 보완을 확인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의 학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객관적인 연구배경 제시 및 충분한 연구결과 고찰 등을 확인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학위심사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및 올바른 논문저자됨(authorship)의 준수를 확인한다(아래 3항).

3.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가) 학위논문 연구는 국제 수준 및 국내 연구윤리 기준과 법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학위관련 임상연구가 수행된 병원의 자체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학위논문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아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번호 명시).

① 인간대상의학 연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혹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② 실험동물이 사용된 연구: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③ 실험자와 주변의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구 (예: 방사선물질, 감염성생물 및 물질): Biosafety Committee(생물안전위원회)

다) 피심사자는 연구의 기획, 연구결과물의 획득 및 고찰과 자료수집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연구노트 등 관련 자료를 갖추고, 심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학위논문에 제시되는 연구결과물이 공동연구자 및 용역연구자에 의하여 제공되었을 경우, 피심사자와 지도교수는 해당 공동연구자 (용역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심사위원회가 요구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피심사자는 학위논문내용의 중복성 여부를 공신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예: Ithenticate 또는 Turn-it-in).

[별표 2]

연구윤리 준수 사항 자체점검표

학위논문 작성에서 연구윤리 준수 사항 확인 목록				
아래 각각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연구의 진실성 확인	연구의 기획, 연구결과의 획득 및 고찰과 자료수집 과정을 피심사자 본인이 하였습니다.			
	실험 설계, 데이터 표시, 해석 등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이터와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유효한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공동연구 성과물의 사용 및 수행자 명시	이 논문에 실린 모든 데이터, 표, 그림 등은 본인이 모두 직접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 공동연구성과물로 생성된 데이터, 표, 그림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한 사람(또는 회사)들을 각주로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공동연구성과물로 생성된 데이터, 표, 그림 등이 있으며 공동연구자들은 이 학위논문에서의 사용에 동의하였습니다.			
연구의 독창성, 기출판 여부확인	이 논문의 어느 부분도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의 다음 부분이 아래에 출판되었고 본문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기 출간된 논문을 인용한 학위논문의 쪽 번호 입력) (기 출간된 논문의 서지사항 입력)			
	기출판된 논문의 경우 등재된 저자들은 해당 부분을 본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표절 피하기	이 논문에 사용된 모든 연구를 정확하게 출처 표시를 했습니다.			
	타인의 연구 성과를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표를 재현하거나 수정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어 원고에 출처를 인용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의 윤리와 관련된 심사와 승인	학위논문 연구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의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인간대상의학 연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혹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번호:			
	(2) 실험동물이 사용된 연구: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번호:			
	(3) 실험자와 주변의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구(예: 방사선물질, 감염성생물 및 물질): Biosafety Committee(생물안전위원회) -IBC번호:			
이해상충의 공개	본 연구를 위한 자금이나 지원을 논문에 공개하였습니다.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이나 제품에 대한 재정적 이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예: 고용, 상담, 계약 관계, 유급증언, 명예, 여행 보조금, 자문위원회 멤버십, 주식 소유권, 특허 또는 특허 출원 등)			
	논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저자				
서명:		날짜:		
지도교수				
서명:		날짜:		